

기상청 대용량 데이터 활용 안내

- 대용량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1. 대용량 API 서비스 실시
2. 대용량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확대
3.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적용 안내
4.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제도

1. 대용량 API 서비스 실시

개요

서비스명: 대용량 API 서비스

서비스 신청: 「대용량 API 서비스 활용계획서」를 기상청 메일(kmdatatagub@korea.kr)로 제출

※ 신청서(활용계획서) 위치: 기상청 API허브(apihub.kma.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23번 게시물

서비스 일시: 2024년 3월 29일

서비스 대상: 기존 및 신규회원

내용: 일시적(최대 30일)으로 API 일 호출용량 및 건수 상한 증대

운영

신청: 사용 API명, 필요한 데이터 내용, 활용목적과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서비스 신청

안내: 대용량 API 서비스 신청 순으로 인증키와 사용방법(호출 URL)을 포함한 안내메일 발송

※ API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도의 개발기간이 소요

사용: 로그인 없이 전달 받은 인증키와 호출URL로 신청한 데이터 API로 획득 가능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의 일시 중단 또는 변경이 가능

1. 대용량 API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대용량 API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작성제출
(kadatahub@korea.kr)

신청서 검토



신청서 제출 순으로
검토진행

안내 메일 발송



인증키와 활용방법을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2. 대용량 데이터 온라인(FTP) 서비스 확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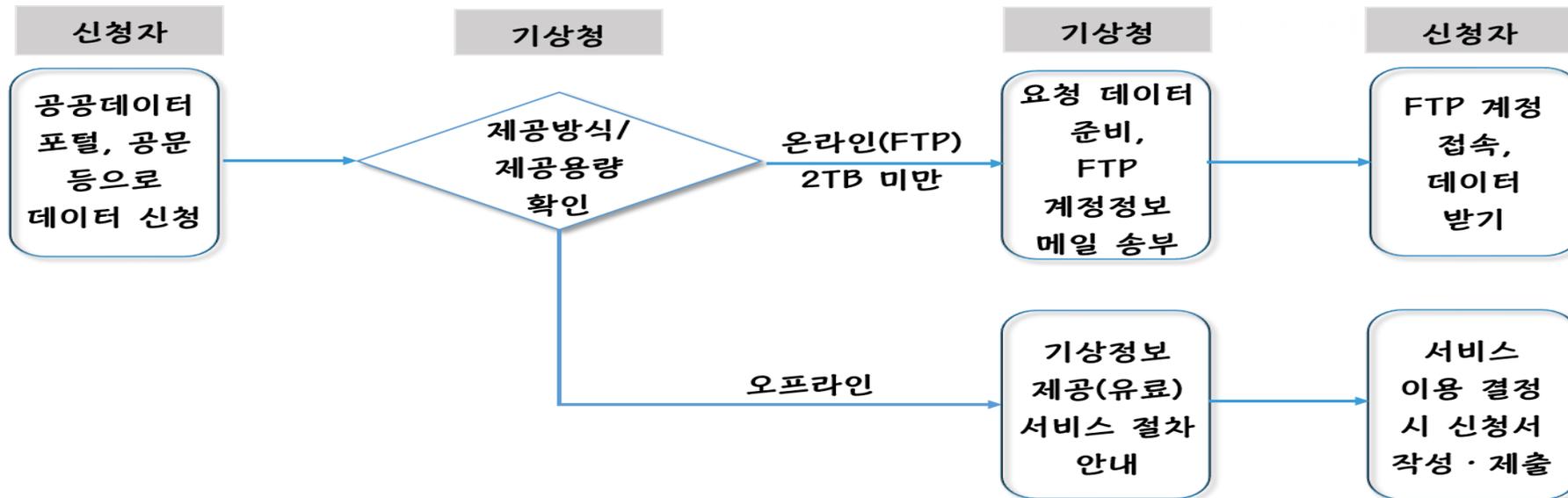
서비스명: 대용량 데이터 온라인(FTP) 서비스

서비스 신청: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이용 또는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서 위치: 공공데이터포털 > 데이터요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중앙 하단 “제공신청서 작성”

서비스 개시: 2023년 12월 29일

서비스 내용: FTP를 통한 제공 용량 상한 증대(300GB→2TB)



기상청 데이터 제공 처리 절차

3.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적용 안내

현황

고시명: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개정 시행일: 2024.1.17.

내 용: 수작업 전산처리자료 제공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이용)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수료 부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요자가 데이터를 받아가는 경우는 무료 (API, FTP, 웹 다운로드)

개정

▪ 기본 · 가산수수료 구간 · 금액 조정

※ 기존 80만원/1TB → 개선 2만원/1TB

▪ 원시데이터 가공 (추출 · 변환) 서비스 신설 및

해당 서비스 수수료 할증 (20%)

기존 수수료 (원)			개정 수수료 (원)		
구간	기본	가산	구간	기본	가산
1KB ≤	3,000	100/1KB	1GB >	1,800	-
1MB ≤	103,000	200/1MB			
1GB ≤	303,000	500/1GB	1GB ≤	1,810	10/1GB
			100GB ≤	2,800	20/1GB
1TB ≤	803,000	1,000/1TB	1TB ≤	21,280	30/1GB
			10TB ~ 50TB	297,760	40/1GB

4.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제도

현황

법령명: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 일부개정 시행일: 2024.2.29.

개정내용: 수작업 기상정보 제공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수수료에 면제 조항, 50% 감경 조항 신설

면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
-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한 연구사업 수행 기관·단체

감경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등)
- **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